

| 문서번호 | BSKS-1-1-39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9.24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1/4 |

2012.09.24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교원의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교내의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, 보조금 및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일반연구비라 함은 논문게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를 말한다.
 - ② 정책연구비라 함은 본교 교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.
 - ③ 보조금이라 함은 선택된 연구과제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 - ④ 장려금이라 함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와 교수업적이 우수한 자(교수업적평가 종합순위 15%이내) 및 대학교재발간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, 보조금 및 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기타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4조(수급자의 자격) 이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, 보조금 및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교수업적평가 종합순위 85%이내인 본교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- 1. 일반연구비는 논문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교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한 교원
 - 2. 정책연구비 및 보조금은 정책연구를 의뢰한 부서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지원하기로 한 교원
 - 3.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의 장려금은 교내·외에 게재한 논문이 우수하여 논문편집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지원하기로 한 교원
 - 4. 대학교재발간 실적이 우수한 자의 장려금은 본교 소비조합 출판부에서 출간한 교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교원
 - 5. 교수업적이 우수한 자의 장려금은 본교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 직전 학년도의 교수업적평가 종합순위가 15%이내인 교원
- 제5조(연구비지급신청) 일반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비신청서(계획서포함)(별지 제1호 서식)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 정 2020.09.25.>



| 문서번호 | BSKS-1-1-39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9.24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2/4 |

- 제6조(일반연구비, 보조금 사용) ① 일반연구비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교원은 지정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- **제7조(연구비관리)** 총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서는 '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지침'에 준해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수급자의 자격의 "교수업적평가 종합순위 85%이내인 자"의 자격제한은 2013학 년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| 문서번호 | BSKS-1-1-39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9.24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3/4 |

(별지 제1호 서식)

| 20 | 약넌 | | — . | | | | | ī | | | |
|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----|-----|--------|---|
| | | Ĺ | <u>면</u> 구년 | ᄾ | 1 원 | 신 | 청사 | 1 | | | |
| 연구 과제명 | | | | | | | | | | | |
| 연구 | 성 | 명 | | | | | | 직 | 위 | | |
| 책임자 | 소 | 속 | 과(계열) (| | | | | | ' | 전공) | |
| 신청 연구비 | 1차 | 년도 | | | 합 | 계 | 연구 | 20 | 년 월 | 월∼20 년 | 월 |
| | | | | | | | 기간 | (| | 년) | |
| 본인은 교내연구비를 수령함에 있어 연구비 지원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연구계획에 따라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며, 연구비 지급규정 제12조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한 연구비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2 0 영구: | 년 백임자 | 월 | 일 | | (인] |) | |
| 상기 연구자를 교내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하오니 연구 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
2 0 년 월 일

소속 학과(계열)장 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| 문서번호 | BSKS-1-1-39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| 2012.09.24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| 4/4 |

연 구 계 획 서

| | 구목적 요성)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|------|--|
| _ | 구내용 및 방법) | | | | | | | | |
| | 나항(해당 | 국내·외 연구원 | 등향 또는연구배경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| | | | | 및 활용 | |
| | 기재할 () | | | | | | | | |
| ④ 참. | 고문헌 | | | | | | | | |
| | | | 연구결과 발표 | | | | | | |
| 순번 | 학 | 술 지 | 명 | 빌 | 발행국가 - | 발 | 행 フ | 관 | |
| 1 | | | | | | | | | |
| 2 | | | | | | | | | |
| 3 | | | | | | | | | |
| ⑥ 신청연구비(소요예산 산출내역 | | |) | | | | | | |
| 항목 | | | 연구비(원) | | 산출근거 | | | | |
| 인건비 | 연구도 | 보조원 인건비 | | | | | | | |
| | 연 | 구활동비 | | | | | | | |
| | | 여비 | | | | | | | |
| | | 회의비 | | | | | | | |
| ~- ¬ | | 수용비 | | | | | | | |
| 연구 경비 | | 제잡비 | | | | | | | |
| 경 <u>미</u> | 시약재료 및 도서구입비 | | | | | | | | |
| | 기기임차료 | | | | | | | | |
| | 기 | 기구입비 | | | | | | | |
| | | 기타 | | | | | | | |
| 계 | | | | | | | | | |